연구실 안전관리 규정

2022. 12. 07.



강 서 대 학 교

제1장 총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"연안법"이라 한다)에 의하여 강서대학교 내 각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강서대학교(이하" 본 대학교"라 한다)에서 실험·실습을 수행하는 실험실 및 부속기관과 이에 종사하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-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① "연구실"이라 함은 교직원, 학생이 실험·실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실, 실험실, 실습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.
- ② "연구활동종사자"라 함은 대학 및 부속기간 연구실에서 실험·실습을 수행하는 교직원, 학생 등을 말한다.
- ③ "안전점검"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④ "정밀안전진단"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연안법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, 평가를 말한다.
- ⑤ "사전유해인자분석"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.
- ⑥ "연구실사고"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및 실험·실습실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, 질병, 신체장 해,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, 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.
- ⑦ "중대 연구실사고"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.
 - 가. 사망 또는 후유장애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
 - 나. 3개월 잇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
 - 다. 부상자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
 - 라. 연안법 시행령 제13조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

제2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

제4조(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)

- ①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
 - 2. 안전점검계획의 수립
 - 3.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
 - 4. 그 밖의 연구실 안전환경에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
-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(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시행세칙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안전관리 조직)

- ① 본 대학교 소관 연구실의 안전관리총책임자는 사무처창으로 하며,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안전관리총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확보 및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구실별로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
- ③ 안전관리총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.

제6조(연구실책임자의 책무)

연구실책임자는 각 연구실에 관여하는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 지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- 1. 연구실의 시설물, 기기,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취급, 유지관리, 폐기에 관한 사항
- 2. 연구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
- 3. 연구실 안전수칙 및 안전표지판 게시
- 4. 1일 1회 연구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의 실시
- 5. 실험·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
- 6.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사항(제11조 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연구실만 적용)

제7조(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의 책무)

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각 연구실 소속 조교 또는 직원으로 지정하며 연구실책임자의 직무를 보조 또는 대행한다.

제8조(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책무)

- ① 연구실안전황경관리자는 연안법에 따라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연구실의 정기점검, 정밀안전진단, 및 특별안전점검의 실시
 - 2. 연구실 안전황경 조성에 필요한 장비 및 기구 구입
 - 3. 연구실 안전교육 정보제공 및 지원
 - 4.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·조언, 후속대책수립
 - 5. 연구실 안전황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게의 유지·관리
 - 6. 연안법 또는 타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 건의
 - 7. 그 밖의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-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문교육의 시간, 내용 및 방법은 연안법 시행규칙을 따른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 하여야한다.이 경우 대리자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 할 수 없다.
 - 1. 여행·질병이나 그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- 2.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

제3장 안전관리

제9조(보험가입)

- ① 안전관리총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・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해야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.
 - 1. 「산업재해 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
 - 2. 「사립학교교원 연금법」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

제10조(안전교육)

-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· 훈련을 실시하여야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은 연안법 시행규직을 따른다.
- ③ 연구실책임자는 교육실시 후 안전교육 일지 「별지 제1호서식」와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, 「별지 제2호 서식」을 기록하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교육결과에 대하여 교육 이수시간 및 참여율 등 통계자료를 유지 관리하여 야 한다.
- ⑤ 안전관리총책임자는 안전교육·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1조(안전점검)

- ① 안전관리총책임자 및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일 상 점 검 :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, 기구, 전기, 약품,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실책임자가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 기 전에 연구실 일상점검표 「별지 제3호서식」에 따라 실시하는 일일점검
 - 2. 정 기 점 검 :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, 기구, 전기, 약품, 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연구실안전환 경관리자에 의해 매년 1회 이상 실시
 - 3. 특별안전점검 : 폭발사고, 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의해 실시
- ③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연구실은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대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1. 연구개발활동에「화학물질관리법」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
 - 2. 연구개발활동에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
 - 3. 연구개발활동에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
- ④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・방법・절차 등은 연안법을 따른다.

제12조(안전관리비 계상)

- ① 안전관리총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여 야 한다.
 - 1. 연구활동종사에 대한 보험가입
 - 2. 연구활동종사에 대한 교육·훈련
 - 3. 연구시설에 대한 안전점검
 - 4.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·유지 및 보수
 - 5.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
 - 6.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인건비 총액의 1%이상 2%이하의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

제13조(시설·장비의 안전유지)

- ① 연구실의 시설 및 장비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실책임자는 위험물 보관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비가 설치되어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③ 화재·폭발 등의 발생요인이 있는 연구실에는 경보장치, 소화기 등의 소방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④ 연구실의 건축, 전기, 기계, 환경시설과 관련하여 변경이나 추가 설치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미흡 할 경우, 일정기간 해당 연구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- ⑥ 시약 및 위험물 등은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격리 보관되어야 하며, 보관장소는 보관물의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⑦ 모든 용기에는 내용물의 이름, 위험성, 사용방법, 구입날짜, 사용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⑧ 시약 및 위험물 등은 실험·실습에 필요한 사용량만을 배분하고, 사용 후 잔여량은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다시 보관하여야 한다.
- ⑨ 연구폐기물은 성상(性狀)별(혼합시 폭발 위험성 물질 제외)로 분리하여 지정 보관통에 넣어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, 부착된 표지판에 종류, 발생일시, 취급 시 유의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4조(안전표식의 설치)

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역,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연구실 특성에 맞게 작성하고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또는 물체에 설치, 유지, 관리하여야 한다.

- 1. 연구실 일상점검표 [별지 제3호서식]
- 2. 연구실 사고대응 체계 [별지 제4호서식]
- 3. 연구실 안전수칙 [별지 제5호서식]
- 4. 비상시 행동 요령 [별지 제6호서식]
- 5. 연구실 및 시설, 장비의 안전·보건 표지
- 6. 본 대학교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
- 7. 유해인자별 취급·관리대장 및 물질안전보건자료(제11조에 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연구실만 적용)
- 8. 각 수업별 사전유해인자분석결과(제11조에 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연구실만 적용)

제15조(사고조치)

-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수칙[별지 제5호서식]을 준수해야 하며 연구실에 안전사고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비상시 행동 요령[별지 제6호서식]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즉시 그 사실을 연구실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 사고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실사고 조사표[별지 제7호 서식]를 작성하여 사고 발생 상황을 안전관리총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소방서 및 병원 등 유관기 관에 협조 요청한다.
 - 1.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
 - 2. 사고조치 및 전망
 - 3. 그 밖의 중요한 사항
- ③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- ④ 안전관리총책임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고 동종·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등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해야 한다.
- ⑤ 연구실사고의 발생 현황은 인터넷 홈페이지, 게시판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8월부터 시행한다. 부 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. 부 칙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4월부터 시행한다. 부 칙

제1조(전부개정)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 제정되어 그동안 일부 개정되었으나, 연구실안전관리 업무 향상을 위하여 2022년 12월 07일에 전부 개정한다.

제2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							담당	팀장	처장						
	강서대학	학교 '	안전고	교육일지		재									
교육일시	20	년 울	릴 일	<u> </u>	교육대상		교육내용 (중복표시가능)								
프릭근시	시간 년	분 (00 :	00 ~ 0	0 : 00)		□ 일반적인 연구실 안전교육 □ 소방 안전교육									
교육장소	과덕	학관 층	호		. ■ 대학생	□ 전기 안전교육 □ 가스 안전교육									
강의과목					□ 대학원생 □ 연구원		바이오 안전교육 화공약품 안전교육 기계 안전교육 위험물 안전교육 기타 안전교육 개별실험특성에 맞는 교육 등)								
	구 분	남	여	계		교육미이수사유									
교육인원	교육대상자														
_ _	교육이수자														
	교육미이수자														
교 육 내 용	1. 2. 3. 4. 5.														
교육방법				오프라인	! 연구실 안전교 ·	<u>.</u> 육									
담당교수	학	과		직	위										
및 조교								(인)							
기 타															

안전교육 참석자 명단

학과(부)명 : 20 년 월 일

교육구분: 정기교육·훈련□, 신규교육·훈련□, 특별안전교육·훈련□,기타()

연 번	성 명	서 명	연 번	성 명	서 명
1			28		
2			29		
3			30		
4			31		
5			32		
6			33		
7			34		
8			35		
9			36		
10			37		
11			38		
12			39		
13			40		
14			41		
15			42		
16			43		
17			44		
18			45		
19			46		
20			47		
21			48		
22			49		
23			50		
24			51		
25			52		
26			53		
27			54		

^{*} 교육실시 후 1주일 이내 기록할 것

* 기록유지 : 3년간 보존

[별지 제3호 서식] 시행령 제10조제1항 **20 년도 월 연구(실험)실 일상점검표**

(제5조제4항 관련)

※ 연구활동종사자는 반드시 실험전에 일상점검실시 (점검방법:양호○,불량X,해당없음/)

소 속 : • 연구(실험)실명 :

															_	_ '	\ <u>_</u> _	-, _	•													
연	구실책임자 결재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점	검자 서명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안전점검항목	1	2	3	4	5	6	7	8	9	10	11	1 12	13	3 14	15	16	17	18	19	20	21	22	23	3 24	25	26	27	28	29	30	3
	연구실(실험실)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																								1							
일	_ : _(; : ; : ; : _ : _ : : : : :																							\perp							<u></u>	
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<u> </u>	
	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 게시																							\perp						Ш	<u></u>	
	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전원투입 상태 확인 및 무분별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<u> </u>	
전																								\perp							<u></u>	
기	기기의 외함접지 또는 정전기 장애방지를 위한 접지 실시상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전기 분전반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亽	소화기 표지, 적정소화기 비치 및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상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비상구, 피난통로 확보 및 통로상 장애물 적재 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방	소화전, 소화기 주변 이물질 적재금지 상태 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ار	기계 및 공구의 조임부 또는 연결부 이상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_
^ 	위험설비 부위에 방호장치(보호 덮개) 설치 상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$\overline{}$
41	기계기구 회전반경, 작동반경 위험지역 출입금지 방호설비 설치 상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_
	유해인자 취급 및 관리대장, MSDS의 비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$\overline{}$
 화	화학물질의 성상별 분류 및 시약장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 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_
Ι.	소량을 덜어서 사용하는 통, 화학물질의 보관함.보관용기에 경고표시 부착 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$\overline{}$
공	실험폐액 및 폐기물 관리상태 (폐액분류표시, 적정용기 사용, 폐액용기덮개체결상태 등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_
	발암물질, 독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격리보관 및 시건장치 사용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$\overline{}$
	가스 용기의 옥외 지정장소보관, 전도방지 및 환기 상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 7!	가스용기 외관의 부식, 변형, 노즐잠금상태 및 가스용기 충전기한 초과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[]	가스누설검지경보장치, 역류/역화 방지장치, 중화제독장치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^	배관 표시사항 부착, 가스사용사설 경계/경고표시 부착, 조정기 및 밸브 등 작동 상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$\overline{}$
	주변화기와의 이격거리 유지 등 취급 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생물체(LMO 포함) 및 조직, 세포, 혈액 등의 보관 관리상태(보관용기 상태, 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\Box		
 생	관기록 유지, 보관 장소의 생물재해(Biohazard) 표시 부착 여부 등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,		i
 물	손 소독기 등 세척시설 및 고압멸균기 등 살균 장비의 관리 상태																													\Box		_
<u>a</u>	생물체(LMO 포함) 취급 연구시설의 관리·운영대장 기록 작성 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\Box		
l	생물체 취급기구(주사기,핀셋등),의료폐기물 등의 별도 폐기 여부 및 폐기용기 덮개설치 상태																İ								1					\Box		_

사고발생에 따른 비상 연락망 및 응급체계

총장 비서실: 2600-2420 행정본부 전공교육학과 사무처장 : 2600-2470 간호학과 : 2600-2516 총무팀장: 2600-2471 식품영양학과: 2600-2518 연구실 책임자 연구실 안전관리부서 사고발생시 조치내용 연구실책임자 사고보고 간호학과장 : 2600-2564 사고처리 식품영양학과장: 2600-2598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사고원인분석 시설관리과김명석:2600-2480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대책수립 간호학과 실습조교 : 2600-2516 현장보존/기록 식품영양학과실습조교:2600-2518 사고발생시 행동 최초발견자 관계기관 위급상황 인지/신고 구조대: 119 상황전파및응급조치 강서소방서: 02)6981-5100 강서경찰서 : 182 대피유도 연구실 사고발생 이대목동병원: 02-2650-5114 사고현장보존

연구실 안전수칙

- 1. 비상시 행동요령과 비상연락망을 숙지하여야 한다.
- 2. 실험.실습실은 항상 청결하고, 정리 정돈 상태를 유지한다.
- 3. 실험,실습실에서 흡연, 취사, 숙식, 놀이 등을 행하여서는 안된다.
- 4. 실험,실습 전에 일상 점검표를 매일 작성한다.
- 5. 실험.실습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실험할 내용과 기기의 취급요령,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 실험을 실시한다.
- 6. 실험.실습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.(호흡보호구, 보안경, 안전장갑, 실험복 등)
- 7. 실험기기가 가동 중이거나 실험 중에는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한다.
- 8. 실험기기 사용은 정격용량을 준수하고,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.
- 9. 고압가스 용기는 전도방지장치 체결, 보호 캡 사용, 재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10. 고압가스 용기는 인화물질, 화기 등으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.
- 11. 화재 발생 등 비상시 탈출이 가능하도록 출입문과 비상통로(복도)에 실험기기 및 물품을 배치하거나 적재하지 않는다.
- 12. 최종 퇴실자는 전기기기 전원차단, 인화성물질 격리, 위험물 및 고압가스의 안전한 보관, 급수차단, 정리정돈, 잠금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

강 서 대 학 교

비상시 행동 요령

- 1. 화재 및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방안
 - 가. 화재 경보기를 작동한다.
 - 나. 119로 전화한다.
 - 다. 화재를 쉽게 끌 수 있는 경우 소화기를 사용하여 끈다.
 - 라. 건물 안의 사람들을 대피시킨다.
 - 마. 화재가 발생한 출입구의 문을 닫는다.
- 2.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경우 대처방안
 - 가.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부른다.
 - 나. 필요한 응급처치를 한다.
 - 다. 연구실 사고 대응체계를 참고하여 연구실책임자에게 신고한다.
- 3. 비상 대처기구 설치위치 숙지
 - 가. 가장 가까운 전화
 - 나. 가장 가까운 소화기
 - 다. 가장 가까운 화재경보기
 - 라. 가장 가까운 비상구

4. 비상연락망

교 외	전화번호	교 내	부 서	전화번 호
119 구급대	국번없이 119	화재 및 응급상황	시설관리과	482
119 심곡출동대	032-650-4512			
112 범죄신고	국번없이 112	응급처치 및 보건	학생처	462
		시설관리	시설관리과	480
		어그시케이키	간호학 학과장	564
		연구실책임자	식품영양 학과장	598
		어그시아니카카카라나나카	간호학과 조교	516
		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	식품영양학과 조교	518

[별지 제7호 서식]

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서식]

연구실사고 조사표

※ 뒤쪽의 작성망법을 기관명		<u> </u>	<u> </u>	시기 마타	<u>u-1, []0</u>	<u> </u>	야는 犬버	기관 기관 유형	<u>+</u> []대]기업부	학 [설(연) []연구기]그 부				
 주	 소								°							
<u> </u>		사고	일시		년 년 2	월 일	<u> </u> 시									
사고 발생 원 인 및 발생 경		사 장		학과(부서)명: 연구실명: (연구 분야 :												
	= 0 0	연구 내		연구활동 수행 인원, 취급 물질·기계·설비, 수행 중이던 연구활동의 개요 등 기록												
			발생 당													
		성명	성별	출생 연도	신분 ²⁾	상해 부위	상해 유형 ³⁾	상해 • 질 병 코드 ⁴⁾	치료 (예상) 기간	상해 • 질병 완치 여부	후유 장해 여부 (1~ 14급)	보상 여부	보상 금액			
	인적	1														
피해	피해	2														
현황		3														
		4)														
		(5)														
		※ 인적	피해가 5	명을 초피	과하는 경 [.]	우, '인적	피해 현	황'부분만	별지로 -	추가 작성	해 주시기	바랍니다	라.			
	물적 피해		피해물품	<u> </u>					피해금액	<u> </u>	약	약 백만원				
조치 및 향후	현황 후 계획	보고	시점끼	사지 내	부보고	등 조치	치 현횡	및 향	후 계획	힉(치료	및 복 ⁻	구 등)	기록			
재발 병		(상세계획은 별첨)														
	<u>. </u>	점검·진단 [] 실시(실시일:) [] 미실시(사유:)														
연구 안전관	구실 믜 현황		보험	험가입		[]	[] 가입(가입일:) [] 미가입(사유:)									
			안긴	전교육			[] 실시(실시일:) [] 미실시(사유:)									
별	첨			책 상세 남 및 피	계획 해 사진	<u></u>										
			인)	연구주:	체의 장							(٨	너명 또는			
 	관계자 혹 년 월	다인 월 일)	인)	연구실	안전 환경	병관리자	-					(人-	명 또는			
(고 i	= ㄹ/	인)	연구실	책임자							(<i>\</i> -	네명 또는			

작성방법

- 1) 사고 발생 원인 및 발생 경위
- ※ 연구실사고 원인을 상세히 분석할 수 있도록 사고일시[년, 월, 일, 시(24시 기준)], 사고 발생 장소, 사고 발생 당시 수행 중이던 연구활동 내용(연구활동 수행 인원, 취급 물질・기계・설비, 수행 중이던 연구활동의 개요 등), 사고 발생 당시 상황[불안전한 연구실 환경(기기 노후, 안전장치・설비 미설치 등), 사고자나 동료 연구자의 불안전한 행동(예시: 보호구 미착용, 넘어짐 등) 등]을 상세히 적습니 다.
- 2) 신분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.
- ※ 기관 유형이 "대학"인 경우에는 ① 교수, ② 연구원, ③ 대학원생(석사·박사), ④ 대학생(학사, 전문학사)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적고, 그 밖의 신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적습니다.
- ※ 기관 유형이 "연구기관"인 경우에는 ① 연구자(근로자 신분을 지닌 사람), ② 학생연구원에 해당 하면 그 명칭을 적고, 그 밖의 신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적습니다.
- ※ 기관 유형이 "기업부설연구소"인 경우에는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에 신고된 신고서를 기준으로 ① 전담연구원, ② 연구보조원, ③ 학생연구원에 해당하면 그 명칭을 적고, 그 밖의 신분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상세 명칭을 적습니다.
- 3) 상해 유형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.
 - ① 골절: 뼈가 부러진 상태
 - ② 탈구: 뼈마디가 삐어 어긋난 상태
 - ③ 찰과상: 스치거나 문질려서 살갗이 벗겨진 상처
 - ④ 찔림: 칼, 주사기 등에 찔린 상처
 - ⑤ 타박상: 받히거나 넘어지거나 하여 피부 표면에는 손상이 없으나 피하조직이나 내장이 손상된 상태
 - ⑥ 베임: 칼 따위의 날카로운 것에 베인 상처
 - ① 이물: 체외에서 체내로 들어오거나 또는 체내에서 발생하여 조직과 익숙해지지 않은 물질이 체내에 있는 상태
 - ⑧ 난청: 청각기관의 장애로 청력이 약해지거나 들을 수 없는 상태
 - ⑨ 화상: 불이나 뜨거운 열에 데어서 상함 또는 그 상처
 - ⑩ 동상: 심한 추위로 피부가 얼어서 상함 또는 그 상처
 - ① 전기상: 감전이나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한 상함 또는 그 상처
 - ② 부식: 알칼리류, 산류, 금속 염류 따위의 부식독에 의하여 신체에 손상이 일어난 상태
 - ③ 중독: 음식이나 내용・외용 약물 및 유해물질의 독성으로 인해 신체가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상태
 - ④ 질식: 생체 또는 그 조직에서 갖가지 이유로 산소의 결핍, 이산화탄소의 과잉으로 일어나는 상태
 - ⑤ 감염: 병원체가 몸 안에 들어가 증식하는 상태
 - ⑩ 물림: 짐승, 독사 등에 물려 상처를 입음 또는 그 상처
 - ⑪ 긁힘: 동물에 긁혀서 생긴 상처
 - ⑱ 염좌: 인대 등이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찢어져 생긴 손상
 - ⑲ 절단: 예리한 도구 등으로 인하여 잘린 상처
 - ⑳ 그 밖의 유형: ① ~ ⑲ 항목으로 분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상해의 명칭을 적습니다.
- 4) 상해・질병 코드는 진단서에 표기된 상해・질병 코드(질병분류기호 등)를 적습니다.